꿈이 이루어지는
따뜻한 행복도시 김해

| 2024년 1월 |
| --- |
| 제258회 임시회 |

#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

김 해 시

(기획예산담당관)

#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연월일 : 2024년 1월 일
제 출 자 : 김 해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현재 운영 중인 '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'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치중하여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, 기능과 역할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. 이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기능을 보강한 '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'를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의 품질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○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○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○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○ 위원의 준수 사항(안 제8조)
○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○ 「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(안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붙 임
○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부서협의
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 : 원안동의
- 규제사전심사(법무담당관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평가(여성가족과) : 개선권고(불수용)

· 권고사항 :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제3조(구성)제3항에 ‘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’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

· 불수용 사유 :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됨. 따라서 자치법규에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법규의 해석·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. 이에 불수용 처리하고 위원회 위촉 시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음.

○ 입법예고 : 2023. 11. 30. ~ 2023. 12. 20.(접수의견 없음)

○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○ 조례·규칙심의회 : 2024. 1. 8.

김해시 조례 제 호

#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기능)** 김해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중·장기 시정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김해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
3.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2. 연구 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
3.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⑤ 간사는 김해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그 부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** 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준수사항)**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
2.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한 알선·청탁 금지
3. 김해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의 수행 금지
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 금지

**제9조(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)** 위원은 별표에 따라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**제10조(심의·의결 사항의 반영)** ①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안건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「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「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[별표]

# 보안 및 청렴서약서(제9조 관련)

본인은 20 . . .부터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
2.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한 알선·청탁 금지
3. 김해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의 수행 금지
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 금지

20 년 월 일

서 약 자 주 소:

성 명: (서명)

김 해 시 장 귀하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**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**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**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**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**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「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」

## 1. 비용발생요인

○ 해 당 없 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대상) 제1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○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김 재 한